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02호 2019. 9. 2.(월)

공 고

○ 목포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 ----- 2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공보과 ☎ 061-270-8539

목포시 공고 제2019-1219호

목포시 금고 지정 계획 공고

목포시 금고 약정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목포시 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차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일

목 포 시 장

1. 지 정 방 법 : 공개경쟁

2. 약 정 기 간

○ 2020. 01. 01. ~ 2022. 12. 31 (3년)

3. 취급회계 및 금고의 수 : 2개

○ 주금고 : 일반회계, 통합관리기금

○ 부금고 :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통합관리기금 외 기금

4. 신 청 자 격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금융기관 중

○ 공고일 현재 목포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5. 시금고 취급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및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6. 시금고 지정 신청 절차

○ 관련서류 열람

- 열람서류 : 2018 세입세출결산서 및 2019 세입세출예산서
 - 시 홈페이지(www.mokpo.go.kr)/정보공개/재정정보에서 상시열람 가능

○ 금고지정 신청요령 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9. 5. (목) 15:00
- 장 소 : 목포시청 소회의실 (민원봉사관 2층)
- 내 용 :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 자료는 당일배부)

○ 제안(신청)서 접수

- 기 간 : 2019. 10. 10. ~ 10. 11. (2일간) 근무시간 내(09:00~18:00)
- 장 소 : 목포시청 세정과
- 방 법 : 방문 제출
- 제출부수 : 12부 (원본 1부, 사본 11부) - 각 증빙 및 요약분 포함
- 제출서류
 -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증빙서류, 요약서
 - 각서, 위임장, 사용인감확인서
 - 기타 평가에 필요한 요청 서류 등

※ 확인후 밀봉 예정이므로 접수 시 금융기관의 장 또는 위임 받은 자의 사용인감 지참

7. 평 가 항 목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1)
-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 참조

8. 평가 및 금고지정 방법

-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확인 심의 · 평가함

-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별 프리젠테이션(7분 이내) 및 질의 · 응답을 실시할 예정임
 -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대면 심사 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함
- 기타 평가 절차 및 세부사항은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금고지정 평가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은 주금고, 2순위 금융기관은 부금고로 지정함.
 - 다만, 선순위 금융기관이 지정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금융기관 순으로 지정함

9. 금고지정 추진일정

- 제안서(신청서) 접수 : 2019. 10. 10. ~ 10. 11. (근무시간 내)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제안서 심의 : 2019. 10. 16. (10:00 ~)
- 시금고 공표 및 약정체결 : 2019. 10월 ~ 11월중
- 신·구금고 합동근무 및 인계인수(필요시) : 2019. 12월 ~ 2020. 1월
- ※ 상기 일정은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시금고로 지정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기한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차득점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진행함
 - 금융기관 귀책에 의한 약정미체결로 우리 시에 손해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이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앞으로의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시한 협력사업비를 매년 3. 31일까지 납부
 - 매년 납부하기로 한 협력사업비(출연금)를 약정한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늦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당해 금융기관 일반자금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해당일수 만큼 산출한 변상금을 목포시장에게 지급하여야 함.

- 시금고 약정 이후 해당 금융기관이 제시한 금리적용과 출연금 납부 등 제안서 내용을 미이행 할 경우 금고약정을 해지 할 수 있음

11. 비용부담

- 시금고 지정 이후 금고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출장소 등 사무실 및 세정정보센터 설치 운영, 각종 전산장비 설치와 프로그램 비용 등)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부담으로 함.

12. 기타사항

- 제안(신청)서는 목포시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따라 작성
- 제안(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마감 후 별도로 요구하지 않은 추가 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작성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또는 제반계획,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제안서가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
- 신·구 금고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시 기존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에 대하여는 만기가 도래한 후 인계·인수함.
- 전산시스템은 2020. 1. 1일 부터 실제로 정상운용 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한 정상가동 기간내 운용할 수 없을 경우 소정의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책임있음
- 금고지정 및 약정 관련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을 따름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 (☎ 270-3486)에 문의

[별표 1]

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조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안정성) ※ 「지방회계법」제38조의 조합 등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 (수익성)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 조합 유형별(산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8) 4 4 (19) 6 6 5 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추가배점 불가	(7) (6) (4) (3)	
3. 지역주민이용편의성		21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세정정보센터운영 능력 및 계획	(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시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5) (2)	